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학위수여로 각종 자격 취득 또는 시험응시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단, 자격 취득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자격시행기관 및 시험주관기관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01 사회복지사 2급

자격요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및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이수교과목

구분	과목명	이수과목(학점)
필수 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10과목, 30학점이상 (과목당 3학점이상)
선택 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철학	4과목, 12학점이상 (과목당 3학점이상)

자격증 발급 신청

- 전국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방문 또는 우편신청

구분	학점은행제 이수자 및 학위수여자	전문대학, 대학 졸업자
개인별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원본 1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증명서 원본 1부 • 대학에서 일부 과목을 이수한 경우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평가인정학습과정·시간제등록을 통한 교과목 이수자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공통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3cm×4cm) 2매 • 수수료 5만원(자격증 발급수수료 1만원, 협회 회원증 수수료 1만원, 협회 연회비 3만원) 	

※ 위의 내용은 협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 TEL: 02-786-0845)

02 보육교사 2급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2016.1.12)으로, 보육교사 자격발급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재)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http://chrld.childcare.go.kr>)으로 확인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제1의2호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함.

이수교과목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 (학점)
교사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6학점)
보육 지식과 기술	필수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 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9과목(27학점)
	선택 아동건강교육, 영유아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지도, 특수아동이해, 어린이집 운영관리,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과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12학점) 이상
보육실무	아동관찰및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6학점)
총 이수과목(학점)		17과목(51학점) 이상

주의사항

학점은행제로 보육교사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학위취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음.

자격증 발급 신청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홈페이지(<http://chrld.childcare.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후, 구비서류 등기우편 제출

인터넷 신청	구비서류 등기우편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발급신청서 작성 • 사진파일 등록 (3cm×4cm, JPG 또는 GIF형태) • 수수료 1만원 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발급신청서 출력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 실습 당시 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실습 당시 실습지도교사 보육교사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1급 자격증 사본

※ 서류검정과정에서 상기 구비서류 이외의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 구비서류 제출 주소 : (140-7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 문의처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http://chrld.childcare.go.kr>, TEL: 1661-5666)

03 평생교육사 2, 3급

자격요건

「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2009년 8월 9일 이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포함)로서, 2008년 2월 15일 이후 평가인정학과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으로 교육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이수교과목

구분	교과목	등급별 이수과목(학점)	
		2급	3급
필수과목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4과목 (12학점)	4과목 (12학점)
	평생교육실습(4주간)	1과목 (3학점)	1과목 (3학점)
선택 과목	실천 영역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독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및상담 ※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5과목 (15학점)이상	2과목 (6학점)이상
	방법 영역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총 이수과목(학점)		10과목 (30학점)이상	7과목 (21학점)이상

※ 문의처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계좌·자격실(<http://lledu.nile.or.kr>, TEL: 1577-3867)

04 청소년지도사 2,3급 필기시험 면제

자격요건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시험이 면제 되므로,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등급	응시자격 부여 및 필기시험 면제 대상자(청소년학 전공자에 한함)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 관련과목(8)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및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복지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 관련과목(7)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및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q-net.or.kr>, TEL: 1644-8000)

05 건강가정사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3항에 의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 포함)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문의처 :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 TEL: 1577-9337)

06 한국어교원 2급 자격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가에 따라, 학점은행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국어교원 2급 자격 관련과목 4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문의처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http://kteacher.korean.go.kr>, TEL: 02-2669-9671~4)

07 2급 정사서

-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학점은행제 문헌정보학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문의처 : 한국도서관협회 (<http://www.kla.kr>, TEL: 02-537-6117)

08 이용사·미용사 면허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전문학사, 학사)를 취득한 자
※ 문의처 : 가까운 시/군/구청

09 문화예술교육사 2급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필요한 학력·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자격발급이 가능함.
※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http://acei.arte.or.kr>, TEL: 070-7825-1460)

* 본 자료는 2018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이후의 변경 사항은 홈페이지(www.cb.or.kr)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리플릿 PDF파일 다운로드 경로 : 홈페이지 > 알림방 > 자료실 > 간행물

* ‘학점은행제 첫걸음 동영상’ 오리엔테이션 콘텐츠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니, 제도 이용 전 필수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무교동 77)
전 화 1600.0400
팩 스 (02) 3780.9850
홈페이지 www.cb.or.kr

PL4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각종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

PM2018-29

